

「구미시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12인

3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·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폭염·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31조의2, 제66조의4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, 제33조의2, 제33조의4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24조의2, 24조의3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폭염·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가 커져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,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폭염과 한파는 일반 시민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지만, 특히 이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열악한 주민,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.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,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